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6805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도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미국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C 소재 'D'의 대표이다.
- 원고는 2021. 12.경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1을 피고로, 피고소인 2를 '성명불상의 D 직원'으로 하여 고소하였다. 고소장 중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은 별지1과 같다.
-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22. 8. 2.경 형사조정절차가 열렸으나,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측은 2023. 1. 16.경 피고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 하면서 배상금 감액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피고의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 1. 17.경 원고측에 별지2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 피고는 2023. 3. 27.경 위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 4. 13.경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별지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 을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서는 늦어도 형사조정절차가 열린 2022. 8. 2.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시점



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고, ② 피고는 위 이메일의 전송에 의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위 ②번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위 ①번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하고 있으나, 편의상 논리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일시, 장소, 무단 복제가 된 프로그램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발령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고소 시점에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손해를 안다는 것이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원고 주장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약식명령 확정일 이후에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적 소멸시효 기산점인 2022. 8. 2. 이전부터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과 동일한 8,000만 원을 제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행위가 침해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실인정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해자와 손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은 원고가 고소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약식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원고가 특별히 더 알 수 있게 된 내용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21. 12.경 또는 그 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2. 8. 2.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무 승인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측에 위 이메일을 보낸 것은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배상액을 감액받기 위하여 채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이메일의 내용이나 첨부된 채무제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점은 피고가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까지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고소인측에 선처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민사상 채무의 승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¹⁾ 채무제표도 자료에 불과하고, 형사사건의 고소인인 원고측에

1)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형사절차에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채무도 승인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는데, 본 사건에서는 공탁도 없었고, 단지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다.



서 요청하기에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며, 거기에 어떠한 채무 승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²⁾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2021. 12.경 또는 늦어도 2022. 8. 2.경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 후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

2)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의 취지 참조.



별지1

2. 피고소인의 위법행위

가. 고소인의 크랙 정보(불법복제정보) 관련 - 피고소인 2.의 위법행위

고소인의 E (구, F) 프로그램의 경우, 침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정보(크랙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고소인의 서버로 전송됩니다(단,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명불상의 사용자(피고소인 2.)는 IP 주소 (IPV4 1) 가 할당된 장소에서 아래 <표>상의 컴퓨터 1대에 불법 복제된 E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불법복제한 E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첨부 7. A 크랙 정보 참조)

<표 : 불법 E 사용내역>

	사용 컴퓨터 MAC 주소	프로그램명	사용기간	사용횟수
1	(MAC주소 1)	E	2020-09-07~2021-12-16	107

¹ 크랙(Crack)이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나. 피고소인 1. 을 특정하게 된 원인

(1) IP 주소의 최종할당지 확인

첨부한 고소인의 크랙 자료에서 확인된 IP 주소 (IPV4 1) 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회한 결과 네트워크 할당기관이 통신사인 주식회사 G 로 확인됩니다 (첨부 7. A 크랙 정보, 8. 한국인터넷진흥원 IP 주소 조회 결과 자료 참조).

이에 따라 고소인이 법원을 통해 해당 IP 주소를 주식회사 G 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위 IP 주소의 가입자는 D , 그리고 최종 할당지는 부천시 C , H 호로 확인되었습니다(첨부 9.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자료 참조). 실제 위 주소지에서 D 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첨부 6. D 부천사무소 현장사진 참조).

(2) 고소인 프로그램과 D 의 업무와의 연관성

전술한 바와 같이 D 는 제품 디자인 및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E 프로그램은 모델링,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D 에서 설계 작업을 할 때 E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3차원 설계(디자인), 모델링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첨부 3. E 프로그램 소개자료, 4. 중소기업청 기업상세정보 자료, 5. 제품사이트 기업상세정보자료 참조).

(3) 소결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D 의 대표자인 B 을 피고소인 1. 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8

별지2

From: [redacted] <[redacted]>
Sent: Tuesday, January 17, 2023 5:00 PM
To: [redacted] <[redacted]>
Subject: [redacted] - 재무재표

안녕하십니까? [redacted]의 [redacted]입니다.

요청하신 재무재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을 양지하시어

거듭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dacted] 배상



별지3

법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 , H [] 호 [] 에 있는 'D []
[]'의 대표자로, (MAC주소 1 생략) []'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저작권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D [] 사무실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A [] 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 [] (구 F [])'를 무단 복제하여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권을 침해하였다.